

#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06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11. 19.

발 의 자 : 송두영 의원 외 20인

## 제정이유

○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창출, 노사 협력증진, 고용정책 및 산업 재해예방, 인적자원개발 등 노사민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안 도출과 그 실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함.

## 주요내용

- 노동복지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
- 실업대책 및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
-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
- 일자리창출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
## 제정조례안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체서

-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318호
-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 시행령 제 22349호
- 인근 시군 노사민정 협의회 관련 조례(인천광역시, 부천시)

□ 예산수반사항 : 500만원

□ 기타 참고사항 :

○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

#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근로자·사용자·지역주민 및 안산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, 노사협력 증진,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근로자·사용자·지역주민 및 안산시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기능)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의결한다.

1. 지역 노동복지와 지역노동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
3.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
4.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
5.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6. 기타 노동, 경제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- ① 위원장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3. 시의원 또는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
4. 시 노동업무담당국장 및 고용정책담당국장
5.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
6.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

③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.
2.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의견 청취) 협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,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,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회의록) 협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협회와 실무협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성실히행의무) 각 경제주체는 협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